

## 집합투자규약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(주식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규약

3. 정정사유:

- 클래스 추가(Ae, C-F, C-W, C-P, C-Pe, C-P2, S-P)
- S 클래스 판매회사보수율 인하(0.35% => 0.30%)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클래스 추가	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Class A: 선취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li> <li>2. Class C: 선취판매수수료 부담 없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li> <li>3. Class C1: Class C 수익증권을 3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</li> <li>4. Class C2: Class C1수익증권을 2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</li> <li>5. Class E: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li> <li>6. Class S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li> </ol>	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Class A: 선취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li> <li>2. Class C: 선취판매수수료 부담 없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li> <li>3. Class C1: Class C 수익증권을 3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</li> <li>4. Class C2: Class C1수익증권을 2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</li> <li>5. Class E: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li> <li>6. Class S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li> <li>7. Class Ae: 선취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li> </ol>

			<p>8. Class C-F: 집합투자기구,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, 최초 납입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혹은 최초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9. Class C-W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관리계좌(Wrap)를 통하여 투자하는 가입자, 특정금전신탁,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</p> <p>10. Class C-P: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11. Class C-Pe: 온라인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12. Class C-P2: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,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13. Class S-P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,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
<p>제 10 조(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Class A 수익증권</li> <li>2. Class C 수익증권</li> <li>3. Class C1 수익증권</li> <li>4. Class C2 수익증권</li> <li>5. Class E 수익증권</li> <li>6. Class S 수익증권</li> </ol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Class A 수익증권</li> <li>2. Class C 수익증권</li> <li>3. Class C1 수익증권</li> <li>4. Class C2 수익증권</li> <li>5. Class E 수익증권</li> <li>6. Class S 수익증권</li> <li>7. Class Ae 수익증권</li> <li>8. Class C-F 수익증권</li> <li>9. Class C-W 수익증권</li> <li>10. Class C-P 수익증권</li> </ol>

			<p>11. Class C-Pe 수익증권</p> <p>12. Class C-P2 수익증권</p> <p>13. Class S-P 수익증권</p>
제 39 조(보수)	<p><b>클래스 추가</b></p> <p><b>S클래스</b></p> <p><b>판매회사보수율인하</b></p>	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6.48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2. Class C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15.0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3. Class C1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12.5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4. Class C2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10.00</p>	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6.48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2. Class C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15.0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3. Class C1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12.5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4. Class C2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10.00</p>

		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5. Class E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 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9.50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6. Class S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 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3.50</u>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	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5. Class E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 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9.50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6. Class S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 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3.00</u>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7. Class Ae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 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3.50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8. Class C-F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 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 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9. Class C-W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 분의 7.35</p>
--	--	--	--

			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00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4</p> <p>10. Class C-P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분의 7.35 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8.00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4</p> <p>11. Class C-Pe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분의 7.35 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4.00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4</p> <p>12. Class C-P2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분의 7.35 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6.00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4</p> <p>13. Class S-P 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: 연 1000분의 7.35 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2.40 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4</p>
--	--	--	--

<p>제 40 조(판매 수수료)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①(생략)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 선취판매수수료율 : 납입금액의 1%</p> <p>③④(생략)</p> <p>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을 100분의 0.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.)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S 후취판매수수료 :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이내</p> <p>⑥(생략)</p> <p>⑦ 판매회사는 Class C 수익증권,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2 수익증권, Class 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,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 선취판매수수료율 : 납입금액의 1%</p> <p><u>2. Class Ae 선취판매수수료율 : 납입금액의 0.5% 이내</u></p> <p>③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을 100분의 0.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.)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S 후취판매수수료 :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이내</p> <p><u>2. Class S-P 후취판매수수료 : 없음</u></p> <p>⑥(생략)</p> <p>⑦ 판매회사는 Class C 수익증권,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2 수익증권, Class E 수익증권, <u>Class C-F 수익증권, Class C-W 수익증권, 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, Class C-P2 수익증권, Class S-P 수익증권</u>을 판매하는 경우,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 52 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 수익증권 통장거래 약관”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 수익증권 통장거래 약관” , (Class C-P, 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“ <u>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</u>” )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